

부루세라병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 관리지침

농림부 가축방역과

1.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관리요령

- 모든 가축은 축사간 이동금지하여 추가 발생 최소화
 - 분뇨제거 등 사양관리위한 축사간 이동을 최대한 억제
- 건초·깔짚 등 소각 가능한 물건은 소각후 매몰
 - 축사 내·외의 분뇨는 매몰 또는 한곳에 모아 생석회 도포 후 비닐로 덮어 1개월 이상 발효처리
- 임신축은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임신 5개월령부터는 격리 사육
- 유산 발생시 반드시 모축은 격리하고 즉시 검사 의뢰
 - 유산태아·태반 등 후산물이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소독후 소각(매몰)
 - 부루세라균은 유산과 함께 많은 균이(유산전 1개월~유산후 2개월) 생식기로 배출되므로 유산물 관리가 가장 중요함
 - 유산 후산물 이동시 축사바닥에 오염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후 이동(손수레, 사료포대 등 이용)
- ※ 유산 후산물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개·고양이는 검사·제거
- 이동제한 해제이후에도 모든 임신축은 임신 5개월령 혈청검사 의뢰
- 기타 방역수칙
 - 질병 확인 즉시 농장 세척을 철저히 하고, 정시 소독 실시
 - 우군은 가급적 소규모로 나누고 우군간 접촉 차단
 - 감염 모축에서 태어난 송아지는 반드시 검사 및 살처분·도태
 - 착유시 개체별 수건 사용 등 대책 수립
 - 발생농장의 경우 사료 및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, 특히 축주 자신이 오염원이 될 수 있음

2. 재입식 요령

가. 재입식 개시전 방역조치

(1) 농장내 오염우려 물건 등의 처리

- 유산태아·태반 등 후산물이 있는 경우 소독조치 후 소각(매몰)

- 유산태아·태반 등 후산물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개·고양이 제거
- 건초·깔짚 등 소각 가능한 물건은 소각후 매몰
- 축사 내·외의 분뇨는 매몰 또는 한곳에 모아 생석회 도포 후 비닐로 덮어 1개월 이상 발효처리
- ※ 분뇨의 농장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나, 농장내 매립지 등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정된 처리시설에서 발효처리 후 반출

(2) 세척·소독 실시기간

- 계절·환경적인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, 농장내 오염우려 물건을 처리한 후 재입식 전까지 최소 30일동안 주 2회 이상 농장 청소·세척 및 소독대상물이 흠뻑 젖도록 소독 실시
 - 청소·세척작업을 한 후 소독해야 소독효과가 높음

(3) 대상별 세척·소독 방법

- 축사
 - 축사 내부는 세척액으로 분변 등 오물을 씻어낸 후 천장·벽·바닥의 순서로 소독약 살포, 밀폐 가능한 축사는 건조상태에서 훈증소독 추가 실시
 - 축사 바닥이 토양일 경우 표층의 토양을 제거하고 소독액을 바닥이 흠뻑 젖도록 충분히 살포한 다음 새로운 토양으로 복토
 - 농장내 구충·구서 작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·쥐 등이 축사 내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예방조치 강구
 - ※ 농장내 부루세라병 발생은 일부 축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, 축사별로 발생율의 차이가 있으므로 과거 유산이 있었던 축사 및 집중 발생 축사 등은 더욱 철저한 소독조치 필요
- 축사외부
 - 가축운동장(계류장)은 축사바닥과 동일한 소독조치
 - 농장 진입로, 농장내 이동통로 및 축사 주변 등 외부는 유효소독제로 바닥이 흠뻑 젖도록 소독 실시
 - 분변처리장은 분변처리 후 축사내부와 동일하게 세척·소독
 - 방목장은 분무소독 실시
 - 야생조류의 축사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그물망 등 설치
- 장비·도구 등
 - 작업복, 장화 등은 물끓임 소독 또는 소독액에 침적 소독
 - 농장에서 사용하는 장비(스키로더, 경운기 등) 및 도구는 세척 가능한 범위까지 세척 후 소독을 실시하고, 내·외부 세척·소독이 불완전한 장비 등은 축사내 훈증 소독 시 축사내로 이동하여 훈증 소독을 실시하거나 비닐 등으로 밀폐 포장하여 훈증소독 실시

- 착유시설의 파이프라인, 착유장비 등에 대하여는 뜨거운 물로 세척하고 소독 실시
- 농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내·외부 세척 및 소독 실시

나. 재입식 절차 및 입식후 방역관리

(1) 재입식 가축의 선정

- 재입식 가축은 과거 소부루세라병 발생이 없었던 부루세라병 음성농장에서 구입
-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등에 의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소는 구입하지 않도록 함
- 구입 후 관할 시·도가축방역기관에 혈청검사를 의뢰하여 이상여부 확인
- ※ 재입식은 상기 “1. 재입식 개시전 방역조치”를 시행한 후 추진

(2) 입식후 방역관리

- 입식 소에 대한 세심한 사양관리 및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유·사산 등 이상증상을 확인 즉시 타 입식 가축과 격리 조치하고 시·군 또는 가축방역기관에 신고
- 외부인 농장출입 금지 및 사료차량, 출하차량 등 차량 출입시 철저한 소독 조치
- 농장주는 소 사육농장 방문금지(특히, 유산증상 발생농장 및 부루세라병 양성농장)
- 개, 고양이, 쥐 및 야생동물(조류) 등 부루세라 전파매개가 가능한 동물들의 농장출입 방지 조치
- 농장 내·외부 주기적인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

(3) 정기검진 의뢰

- 농가는 입식 후 60일, 120일 및 6개월이 되는 때 가축방역기관에 혈청검사를 의뢰
- ※ 부루세라병 양성 확인시 부루세라방역실시요령에 따라 해당가축 처리 및 동거가축 관리(이동제한, 재검사 실시 등)

